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안자 : 우형찬 의원 외 9명

나. 의안번호 : 제1391호

다. 제출일자 : 2020. 4. 1.

라. 회부일자 : 2020. 4. 8.

2. 제안사유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점검 체계의 현실적 한계를 개선하고, 실효성이 적은 프로그램 정비, 사회적 여건 변화 반영 등을 위해 감축프로그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
- 객관적 이행점검방안, 교통량 감축효과 및 현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신설·폐지하고, 프로그램별 이행기준 및 경감률 등을 개선하고자 함
- 또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된 사항(별표4, 교통유발계수)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중 실질적 검증이 어려운 유연근무제를 폐지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 프로그램을 자전거이용 환경 구축으로 내용을 정비함. 또한, 전기차 확대를 위해 나눔카이용 프로그램의 내용을 수정하고, 환경측면을 고려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2조)
- 나. 운영지침으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세부 이행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조문을 수정함(안 제6조)
- 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종류, 이행기준, 경감률 등을 정비하여 규정함(안 별표1)
- 라. 개정된 도축법 시행규칙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통유발계수 분류 항목을 수정하여 규정함(안 별표2)
- 마. 개선 내용을 반영하여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참여 신청 서식(안 별지1호 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 서식(안 별지2호 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 통보 서식(안 별지3호 서식) 각각 규정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0. 4. 13. ~ 2020. 4. 21.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원안가결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엄정한 이행점검체계 구축과 제도 실효성 향상을 위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정비에 대해 기 협의된 사항으로 쟁점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량 감축효과 및 현실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객관적인 이행점검방안을 마련하고, 프로그램별 이행기준 및 경감률 등을 개선하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범위 조정 관련(안 제2조 관련)

-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중 ‘유연근무제’를 삭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를 반영하는 등 실제 운영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먼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중 종사자의 30퍼센트 이상이 시차출근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유연근무제’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이 형식적일 수밖에 없어 그동안 시의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받아 온 점을 고려할 때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 프로그램은 최근 몇 년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2부제 및 주차장폐쇄 등의 주차수요관리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통한 교통수요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부담금 경감비율 조정 관련(안 제6조 및 별표1 관련)

-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에 따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이행 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1로 정하고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여건에 따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적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시장이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일방적 또는 자의적인 시행으로 민원 발생 또는 형식적인 시행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칙 또는 지침 등을 따로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별표1에서 승용차부제, 주차수요관리, 자전거이용환경구축 및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 등 관련 프로그램의 이행기준에 시스템, CCTV 및 RFID 등을 통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최대경감비율을 조정함에 따라,

감축프로그램의 이행여부를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각 프로그램별 이행기준에 따른 최대경감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별표1]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주요 개정내용>

구분	프로그램	개정내용	경감률
신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2부제 참여	○미세먼지 저감조치발령시 2부제를 실시 -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자료(일자, 차량번호, 출입시간 등이 포함)를 제출하여 이행확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2부제 참여횟수에 따라 경감을 계산 - 1회 참여 시 0.3%, 최대 5% 까지 경감이 10% 이하인 경우만 인정	5% 이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주차장 폐쇄	○미세먼지 저감조치발령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폐쇄하는 것 -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자료(일자, 차량번호, 출입시간 등이 포함)를 제출하여 이행확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주차장폐쇄 참여횟수에 따라 경감을 계산 - 1회 참여 시 0.6%, 최대 10% 까지 경감이 2% 이하인 경우만 인정	10% 이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참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2부제를 실시 -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자료(일자, 차량번호, 출입시간 등이 포함)를 제출하여 이행확인 ○12월부터 3월까지 2부제 참여에 따라 계산 - 위반대수가 하루 10%이하, 위반일수가 월 주중 일수의 10% 이하일 경우에만 이행 인정	15% 이내
강화	5부제	-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자료(일자, 차량번호, 출입시간 등이 포함)를 제출 하여 이행확인	-
	2부제	-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자료(일자, 차량번호, 출입시간 등이 포함)를 제출 하여 이행확인	10% 이내
	주차장유료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관내(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80→90퍼센트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 -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자료(일자, 차량번호, 출입시간, 주차요금 징수현황 등이 포함)를 제출하여 이행확인	10% 이내
	나눔카 이용	○나눔카 주차면 1면 이상을 제공→나눔카 주차면 제공 ○나눔카 이용 시 이용금액의 50% 경감→○업무공유카 이용 또는 일반 시민 이용 시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에 대해 경감(전기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배차에 대한 이용실적은 추가 인센티브 제공)	5% 이내
완화	주차장축소	○주차면수 "0" 인 경우 부담금 50%→40% 경감	10% 이내
	통근버스운영	-	10% 이내
	셔틀버스운영	○경감산정 = 기본비율(5%) + 운영비율(10%)→경감산정 = 운영비율(10%)	5% 이내
	업무택시제	○경감산정 : 실제 사용금액의 50%(부담금 20%→부담금 5% 범위내, 월별정산)	15% 이내
	기타	○기업체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의 날,배송시스템 개선, 시설물주변 교통환경 개선 등)	5% 이내
삭제	유연 근무제	○종사자의 30% 이상이 시차출근 참여,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및 재택근무 등 실시 ○경감산정 : 종사자 참여율에 따라 경감	20% 이내

■ 교통유발계수 변경 및 별지 관련(안 별표2 및 별지 관련)

○ 동 개정조례안의 별표2는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총 17개 시설의 세분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법 시행규칙1)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동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별지 서식을 변경하는 것은 조례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4]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3조의3 관련) 개정(2019.7.29.)

<[별표2]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중 세분류 주요 개정내용>

대분류	세구분	세분류(현행)	세분류(개정)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다	골프연습장	실외골프연습장
	라	정구장, 헬스클럽, 볼링장, 실내낚시터, 탁구장, 체육도장, 실내골프장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의료시설	나	병원, 의원, 요양소, 진료소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운동시설	가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체육관, 운동장,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
판매시설	나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 전문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
위락시설	나	특수 목욕탕	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관람집회시설	가	공연장 :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자동차관련시설	가	매매장, 정비공장, 세차장, 폐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관광휴게시설	가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휴게소, 어린이회관, 관망탑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